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3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19. 9. 23.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19. 9. 9.
- 회부일 : 2019. 9. 10. (의안번호 : 19 - 109)

2. 제안이유

-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를 심의사유 발생 시 구성·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비상설화(안 제12조제5항)
 -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·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
-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내용 보완(안 제12조제7항 및 제9항)
 - 심의회 개의 및 의결 요건(안 제12조제7항)
 -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제9항)
-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4. 관계법령

- 「주민투표법」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제14조(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)

5. 검토보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·기능상 위원회가 필요하나 안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 심의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안 제12조제5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심의 안전 발생 시 구성·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으로 비상설화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, 안 제12조제7항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수정하고, 안 제12조제9항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및 용어 및 표현 등 정비하는 내용임.
- 검토의견으로는
안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,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관계법령과의 저촉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